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둘 것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냉매취급 관련 현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 비 고
1.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2.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경력을 말한다.
 - 가. 공조냉동시설 공사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공사·설치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나. 공조냉동시설 운영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점검·정비 또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다. 공조냉동시설 유지보수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냉매회수·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라. 공조냉동시설 제조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을 설계·개발 또는 제작업무를 담당한 경력
- 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체에서 냉매재생 또는 폐기업무를 담당한 경력
- 바. 냉매제조업체에서 냉매제조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일정 요건 이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령하도록 하고, 기후·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 및 관리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령하는 요건을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 결함 비율이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냉매회수기기 및 누출감지기 등의 시설·장비와 공조냉동기계 관련 자격이나 실무경력 등이 있는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2931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제22조제1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3 중 “법 제23조의3”을 “법 제23조의4”로, “지정취소”를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49조제1항제7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로 한다.

2의2.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

6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 명령

제22조제2항제22호 중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를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4	600	800	1,000
바. 법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2	600	800	1,000
사. 법 제23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2항제2호	180	240	300

별표 2 제2호자목(중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1호”를 “법 제64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중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2호”를 “법 제64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더목(중전의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3호”를 “법 제64조제2항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취급정보 등에 대한 공개 여부의 심의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31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